

의정활동보고서

제187회 임시회(2004. 3. 3~3. 12)

경 상 특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우수가 지나고 모레면 경칩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망찬 새봄과 함께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랜 겨울가뭄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나 최근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 주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그간 몇차례의 진통끝에 이라크 파병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남미지역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작금의 시국 상황이 그리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 파동으로 인해 사회 각계로부터의 지탄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경제가 고성장 추세인 가운데서도 유독 한국경제만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1월달 실업자 수가 85만 4000명이라는 통계청 발표는 현재의 심각한 경제사정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범죄증가와 철강 원자재 난으로 인한 각종 공사 중단 사태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이 수출확대를 가져와 전체 국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업인에 대한 피해가 크게 우려되므로 농촌 지원대책 수립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능동적인 자세로 정책대안을 찾아내고 합심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들어 첫 도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서는 주요 도정과 관련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고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월동기를 지나 활기 넘치는 새봄을 맞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고 이번 회기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복리증진에 부응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 3. 3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개 황	
II.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공포 사항

3. 의원 신분변동 사항

4.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5. 기타사항

VI. 도정질문

VII. 5분 자유발언

부 록

조 례 안

동 의 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87회 임시회는 2004년 3월 3일 개최하여 3월 1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4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3월 3일(수)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7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을 의결한 후 도정에 관한 질문(김정자 의원, 박승학 의원, 정상진 의원)을 하고 휴회하였다.

3월 4일(목)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김석호 의원, 채희영 의원)을 한 후 기획위원회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권경호 의원을 선출하고 휴회 하였다.

회기중 각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폭설피해지역 현지확인을 실시 하였다.

3월 12일(금)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이정백 의원, 채희영 의원, 박종욱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 관한조례안,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와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주간의자매결연체결안,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수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 한 후 제1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라. 집회공고일 : 2004. 2. 17

마. 집 회 일 : 2004. 3. 3(수)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4. 3. 3 ~ 3. 12(10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47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4	1		1	1		1		
누계	209	22	22	30	33	23	25	23	31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 3. 3(수) 11:00	1. 제187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4. 도정에관한질문 ○ 김정자 의원(비례, 행정사회) ○ 박승학 의원(청송군, 교육환경) ○ 정상진 의원(예천군, 농수산)	제 1 차 원안가결
3. 4(목) 11:00	1. 도정에관한질문 ○ 김석호 의원(구미시, 산업관광) ○ 채희영 의원(문경시, 건설소방) 2. 기획위원장보궐선거	제 2 차
3. 12(금) 11:00	1.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와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주간의자매결연체결안 11.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제 3 차 원안가결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3. 12(금) 10:00	○ 제188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3.8~3.10	○ 현지확인 - 정보화 시범마을(울진, 영양, 영주)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3. 4(목) 15:00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
3. 8~3. 10	○ 현지확인 - 제주도의회 및 사회복지시설(2개소)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3. 4(목)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 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3. 8~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확인(안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3.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확인(울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연어 방류행사 참석 - 동해안 방파제 시설 등 	
3.9~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로인한 농작물 피해지역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 문경, 예천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 3. 5(금)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 지원에관한조례안 ○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와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주간의자매결연체결안 	제 1 차 수정가결 " 원안가결 "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3.10 ~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확인(울진) - 어린연어 방류행사 참석 - 동해안 방파제 시설 등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3.9~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확인 - 안동소방학교 - 구미소방서 - 주요사업 추진현장 및 폭설피해지역 제설 작업현지 확인 (안동 광덕교 개체공사, 의성 미천제방 수해 복구공사, 군위소보~안계간 도로확포장공사)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1 (182)	11 (181)	7 (161)	4 (19)	(1)	(1)		
조 례 안	소 계	10 (83)	10 (83)	6 (75)	4 (7)	(1)		
	의 회 제 안	1 (7)	1 (7)	(4)	1 (2)	(1)		
	도지사 제 출	6 (59)	6 (59)	4 (55)	2 (4)			
	교육감 제 출	3 (17)	3 (17)	2 (16)	1 (1)			
예 산 · 결 산	(17)	(17)	(8)	(9)				
동 의 · 승 인	1 (48)	1 (48)	1 (47)	(1)				
건 의 안	(7)	(7)	(6)	(1)				
결 의 안	(8)	(8)	(8)					
기 타 안	(19)	(18)	(17)	(1)		(1)	유보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9 (184)	11 (181)	10 (83)	(17)	1 (48)	(7)	(8)	(18)			(3)
의회운영	(5)	(5)	(4)				(1)				
기 획	(16)	(15)	(8)		(5)	(1)		(1)			(1)
행정사회	2 (49)	3 (48)	3 (31)		(15)	(1)	(1)				(1)
교육환경	3 (26)	3 (26)	3 (20)		(5)			(1)			
농 수 산	(12)	(12)	(4)		(7)	(1)					
산업관광	3 (26)	4 (26)	3 (13)		1 (12)		(1)				
건설소방	(9)	(9)	(2)		(4)	(2)		(1)			
특 별	(17)	(17)		(17)							
본회의	1 (24)	1 (23)	1 (1)			(2)	(5)	(15)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5 (71)	(5)	(8)	(9)	3 (15)	1 (6)	(3)	1 (7)	(7)	(11)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4)	(2)	(1)	(1)					
교육환경	2 (13)			(1)		1 (6)		1 (6)		
농 수 산	(7)			(1)	(1)				(5)	
산업관광	(14)		(6)	(1)			(3)			(4)
건설소방	3 (24)	(1)		(5)	3 (13)			(1)	(2)	(2)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4 (68)	4 (68)				3 (3)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1 (8)	1 (8)				
교육환경	2 (13)	2 (13)				
농 수 산	(7)	(7)				
산업관광	(14)	(14)				
건설소방	1 (21)	1 (21)				3 (3)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교육감 (2004. 2. 21)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4. 2. 24)
경상북도교육감 (2004. 2. 21)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 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4. 2. 24)
경상북도교육감 (2004. 2. 21)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4. 2. 24)
경상북도지사 (2004. 2. 24)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2. 24)
경상북도지사 (2004. 2. 24)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2. 24)
경상북도지사 (2004. 2. 24)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산업관광 (2004. 2. 24)
경상북도지사 (2004. 2. 24)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	산업관광 (2004. 2. 24)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 2. 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고문번호사조례중개정조례	2004. 2. 26
2004. 2. 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양곡가공업등록및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	2004. 2. 26
2004. 2. 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2004. 2. 26
2004. 2. 12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2004. 2. 23
2004. 2. 12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 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2004. 2. 23

3. 의원 신분변동 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변동내역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 2004. 2. 14일자 의원직 사직

4.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명	기 간	활 동 내 용
건설소방	2004. 2.25~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사 준공식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양~영순간 도로 확·포장공사 - 영주소방서 청사 준공식 - 영천 금호소방파출소 준공식 ○ 소방안전대책 추진현장 방문(영주,영천,예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등 재난취약지역 확인 및 관계자 격려

5. 기타사항

○ 대구·경북 능금조합 정기 대의원총회

- 일 시 : 2004. 2. 13(금) 10:30
- 장 소 : 능금농협 종합가공소
- 참 석 : 최원병 의장

○ 한국 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4. 2. 13(금) 13:00
- 장 소 : 군위 제2석굴암 온천관광호텔
- 참 석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

- 일 시 : 2004. 2. 16(월) 11:00
- 장 소 : 동 대학교 문무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

○ 한국음식업중앙회 군지부 정기총회

- 일 시 : 2004. 2. 19(목) 15:00
- 장 소 : 성주 웨딩
- 참 석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 도립 경도대학 학위수여식

- 일 시 : 2004. 2. 20(금) 11:00
- 장 소 : 경도대학 운동장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이현준 의원, 정상진 의원

○ 경상북도 재향군인회 제45차 정기총회

- 일 시 : 2004. 2. 24(화) 11:0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풍양~영순간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식

- 일 시 : 2004. 2. 25(수) 11:00
- 장 소 : 예천 풍양면 삼강리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제85주년 3.1절 기념식

- 일 시 : 2004. 3. 1(월) 10:00
- 장 소 : 영천 시민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

VI. 도정질문

□ 제1차 본회의

김정자 의원(행정사회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천리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FTA 비준안 통과로 농산물 개방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농민들은 여전히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지역의 청년들은 실업문제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속 시원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더욱 답답합니다. 더욱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정치현실들은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회의를 느끼게 하며,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앙의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에 분개하다 못해 차라리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암담함이 가득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우리 경북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의 이 도정질문들이 다시 한번 우리 경북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확인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동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동해안 개발과 관련한 야심찬 계획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이 올해 163억원의 예산으로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포항~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 투자기본설계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포항~울진간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공사가 2008년까지 착실히 진행되면 경북 동해안 전구간의 4차로 개통이 가능해지고, 그를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벌써 몇 해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것들이며 이제 와서야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더욱이 U자형 동해안 개발의 본격화 혹은 동해안의 동북아 물류 중심지 육성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창의적이고도 새로운 동해안 개발계획은 보이지 않아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L자형 국토개발계획으로 인해 이미 서해안의 경우 인천~아산만~군산~목포~광양만을 연계한 신 산업지대망을 구축하였고 남해안은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마당에 우리 경북은 이제서야 철로를 부설하고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욱이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가 동해안 국도의 3배의 길이인 341km이면서도 11년만에 완공된 것과는 달리 동해안 국도 7호선 확장사업은 134.6km의 길이를 가지고 자그마치 15년째 짚끔공사로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50%대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철저한 각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단순히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도의 건설과 철로가 부설된다는 사실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공기를 최대한 줄이고 줄여 경북 북부 지방의 경제적 회생을 앞당기는 동시에 그러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동북아 해양거점으로서의 중장기적인 동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동해안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 복안이나 청사진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동해안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장래에 자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자원의 보고인 드넓은 바다로 그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관광은 선진국의 경우 이미 20세기 가장 대중적인 관광유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21세기에도 해양관광은 지구촌 최대의 산업으로서 고용과 고소득을 창출한 미래형 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경북 동해안 해양관광사업육성계획을 세우고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동해안 해양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북 동해안 북부의 청정지역에 해양과 관광자원에 기초한 해양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양연구단지, 해양관련 공공기관 등이 집적하는 해양신도시가 건설된다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레포츠, 휴양, 관광에 대한 수요충족이 가능하고 동해안 지역이 보유한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통해 침체된 경북 북부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경북 북부권의 개발촉진은 물론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울진~영주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현재 공사 중인 충남 서천과 경북 상주구간의 동서고속도로를 상주~안동~청송~영덕으로 연결하여 확장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우리는 일하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아 간절한 구직의 기원을 드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원동력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 단념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 4/4분기 구직자 수가 전년 동기 비교할 때 경북의 경우 19.8%가 줄어들어 실업자의 상당수가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서비스 산업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성장동력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200만개 안팎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바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인턴공무원제 실시, 취업정보사이트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기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청년 구직자수 감소 상황을 해결하는 데 미흡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경쟁력 손실은 물론 사회 전체 위기로까지 과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체의 일자리 늘리기이므로 최우선의 과제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며,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생산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관건일 것입니다만, 이와 관련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동시에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일정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재교육도 함께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이면 1992년부터 고속철도공사가 착공된 이래 경부고속철도가 12년만에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그야말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더욱 좁혀져 생활상의 변화 및 경제·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가운데 고속철도 개통이 과연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경부고속철도 개통 뒤 2020년까지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 및 고용 등에서 수도권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은 고속철 개통이 오히려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행위가 여건이 좋은 서울로 옮겨가려는 계기가 되는데, 중앙 종속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은 지난 날 경부고속도로의 개통보다 더 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이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 이득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손실로 다가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득으로 다가온다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정책은 무엇인지, 만약 손실로 다가온다면 그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계상하여 도정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하여 어떤 분석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현재 건설 중인 울진공항의 경우 항공 수요의 감소 및 사업비 조달차질 등으로 인해 완공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완공되기 전부터 울진공항의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의 육류파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전혀 되지 않아 사육농가는 물론, 닭고기 판매 상인들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닭고기 소비가 어느 정도 조류독감 이전 수준을 회복, 사육농가와 관련산업이 안정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도민들은 꿈과 희망을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실음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안정을 찾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광우병 등 육류파동은 앞으로 또 언제 발병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크나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두려운 것은 올 봄에 불어닥칠 황사가 조류독감이나 사스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원인균을 고공운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축산농업의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발병 후 조치하는 방식의 기존 방역시스템을 선예방에 치중하는 방역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가축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바코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가축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와 아울러 현재 턱없이 부족한 축산직 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되어 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생매장하는 방식으로 살처분하는 경우에도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전살이나 타격 등 정상적인 방법의 인도적 도살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승희 교육감님께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유치 움직임이 수도권은 물론 부산·광주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상열병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유치 움직임이 수도권은 물론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상열병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가 경쟁적으로 유치해 나서면서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앞다투어 가세하고 있어 고교 평준화정책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목고가 애초 취지와 달리 명문대 잘 보내는 입시기관으로 변질돼 여기에 가세되는 경쟁이 평준화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특목고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마당에 경기도의 특목고 발표 등 특목고 확대론은 정말 입시지옥으로 가자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에서 특목고, 자립고를 더 만들면 전국 2,000여교교가 특목고와 자립고를 뜻하는 일류와 나머지 교교를 뜻하는 이류로 나뉘어 평준화가 사실상 해체되고 초·중학교는 고액 과외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타지역의 특목고 및 자립고 확대 경향과 관련하여 그 의향이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고교평준화 문제입니다. 얼마 전 우리 경북의 포항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교육감의 용단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부의 이번 사교육비 대책 방안의 발표는 대책 자체가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평가 방법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게는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북지역의 평준화가 물론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적 교육정책 흐름과 더욱이 올해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면 도입되는 7차교육과정은 선택형 교과, 수준별 수업의 실시와 평준화로 인해 생기는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전향적으로 평준화의 틀을 크게 유지하면서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그 의지를 교육감께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학 의원(교육환경위원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답변준비에 애를 쓰시는 의의근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의회의 역할에 관한 정의를 김홍대 교수의 지방자치 입법론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민으로부터 근원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야말로 지방화를 갈망하는 모두의 소망이며 선진 민주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런 즉 이제는 백성의 소리는 곧 신의 소리라는 역사적 명제를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있어 기관분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면서 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합 관리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법령에 의해 각각의 권한을 부여받고 상호견제, 균형을 이루면서도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 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단체장과 권한 배분에 있어 지방의회 측의 권한이 축소 규정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관분리형 모형을 채택하면서도 의회의 민주성보다도 단체장의 능률성, 책임성을 중요시하고 오랜 임명제의 단체장 제도를 운영해온 관행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는 양적으로 확대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대화되고 또 매우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곱씹어 다시 한번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인용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라는 관용적 접두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회가 존경받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부정하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7일 집행부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제18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소속 2명의 전문위원을 교육발령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속한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어처구니없는 의사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타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 활동의 계획서 작성,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안건 준비, 회의자료 준비 등 위원회의 보좌활동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책임자를 의회 회기 중에 공백으로 남기고 14일이 지난 후 후속 발령을 낸다는 것은 명백한 의회에 대한 경시이며, 도정의 한 축인 의회를 무시한 폭력적 무계획적 인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300만 도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규탄하며 지사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지방화가 시대의 명제이고 지방자치가 자치행정과 자치의정이라는 두 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위임사무의 확대, 경찰자치제의 실시 등의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지방의회가 정책 결정자, 행정감시자, 고충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좌기능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회사무처의 보좌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입법정책 부문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현재 인사권자인 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위원실마다 5급 사무관의 배치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경북도의회 도의원 1인당 직원 수는 1.42명으로 전국 평균 1.72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의 광역시의회가 2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마다 5급 직원을 배치하는 담당사무관 제도를 서울시와 강원도의회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담당사무관 제도를 실시하여도 의원 1인당 직원 수는 1.53명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입법 정책 담당관실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주요기능이 입법, 정책부문 전문성입니다. 현재 입법, 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의회사무처내 사무관 1명, 6급 2명으로 하는 담당제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자가 4급 서기관으로 보하여야 하고 그 이하의 범규와 조례를 검토하는 부문과 정책과 대안을 연구하는 자치연구실을 배속시키는 방법을 요청합니다. 충남도의회는 경우 4급 입법정책 전문위원실을 신설하였고, 여타 광역 단위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심사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청 감사실을 의회산하로 옮기는데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열린 정부에서도 감사원의 국회산하 이전을 얘기한 것처럼 집행부가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은 주민들의 감시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제에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집행기관 우위의 권력불균형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의해 견제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개정의 문제이지만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부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따라 전국의 농심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17일 FTA에 따른 피해액이 10년간 전국적으로 5,860억원이며 이중 경북이 가장 커 1,740억으로 추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은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가 전국점유율이 1위로 가장 큰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도의회는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총 10회 중 7회의 도정질문에서 10명의 동료의원들이 농정에 관한 질의와 WTO, FTA대책에 대한 집중적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너무나 일관되고 막연한

대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발전계획수립, 경북농업의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WTO, FTA 농업대책팀, 친환경 농업 종합발전 10개년 계획, 경북우수농산물 공동개발 등 알맹이 없는 이름만 화려한 정책뿐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는 FTA 체결 후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포도비가림, 복숭아 관수, 키 낮은 사과원조성, 배 지주시설 등 고품질 안정생산시설에 2,706억원, 전업농 육성을 위한 매매, 임대차 등 과원규모 확대에 615억원, 과수생산 출하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정비사업에 1,170억원, 폐업보상금 680억원, 경영안정자금으로 721억원 등 총 5,892억원의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이 자금은 정부의 FTA기금 1조7,693억 중 33.3% 해당하는 금액으로 10년간 투자될 금액입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실현성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5,892억원 중 국비가 45%인 2,672억원에 지나지 않고 용자 1,490억, 자부담 624억 등 농민부담분이 35.8%인 2,114억원이고 지방비가 1,106억원입니다.

농가 당 평균 부채가 2,000여 만원인 현 상황에서 과연 몇 농가가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금융권이 요구하는 담보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농가가 몇이겠습니까? 또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산, 영천, 김천 등 포도주산지외 청송, 의성, 안동 등 사과주산지, 배 주산지인 상주 등 시·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다른 사업은 모두 포기해야 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접 경쟁품목이 아닌 딸기, 참외, 토마토 등 과채류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농업현실을 보면서 농도의 수장이신 지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TO, FTA 대책팀의 활동성과와 FTA 체결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종합발전계획의 로드맵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는 농업분야에 2004년 당초예산액을 343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비슷한 규모의 농도라고 할 수 있는 전남과 경남과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수출분야입니다.

FTA체결 이후 향후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경영환경도 국제화가 될 것입니다.

몇몇 학자나 행정가는 농업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품목의 개발과 이를 수출함으로써 FTA 파고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2004년 주요도정업무보고에서 수출농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도 전체 수출액에는 미약하지만 '99년부터 1억 불 이상의 수출실적도 계속 나타내었으며 2004년도에는 1억800만불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원화로 환산해서 1,300억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책은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 중 수출지원 분야의 예산은 15억2,500만원입니다. 이는 경남, 전남에 비해서도 적은 것으로서 그 결과는 수출액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실적 자료에 의하면 경남은 6억8,400만불, 약 경북의 6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남은 1억5,500만불의 차이로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남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경남은 104개소의 농업수출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실적에 따라 기초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적극적인 FTA대응전략으로 수출농업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출농업단지의 확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 전시성사업의 남발과 개발계획의 과대홍보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경북도정실현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라는 용어로 화려하게 홍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운전자금 3,6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내 2,500여개의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그 3,600억원의 지원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인 경우입니다. 또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산마저 확보치 않는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왕경도시림만들기사업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홍보하였습시다라는 여러 기사나 또는 실질적으로 경주시에서 실현가능성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단지 내 대형조형물 설치를 발표했습시다라는 문화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그 계획을 2006년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다시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 육성계획은 국가의 예산을 확보치 못함으로써 진행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민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감과 혼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진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18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평소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2004년도가 어느새 3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엇그제이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볼 때 마냥 희망과 비전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문제, 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경북도민들의 가슴에 암울한 농업의 미래를 보면서, 특히 농업경쟁력이 채 확보되기도 전에 들이닥친 한·칠레FTA비준동의안의 통과 등은 우리 경북 농민들을 절망상태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 가는 슬기로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독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토의 최동단에 위치한 섬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망언은 우리를 분노케 하였으며,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독도와 관련된 사안은 1차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사안이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는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독도가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독도 문제가 남의 일 인양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 경상북도에 속한 섬으로서 바로 옹도 경북의 상징적 존재이며,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곧 독도는 우리 경북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도는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해 왔으며, 심지어 방관자적인 자세로 문제에 임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학 선생이 누구십니까?

일제 강점기 통치사료와 독도영유권 근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일생을 몸 바쳤던 그러한 분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독도지킴이였으며 인생의 좌우명마저 “한 줌 재 되어도 우리 땅 독도 지키터”라고 하셨던 분이였기에 초대 독도박물관장도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박물관장을 지내신 분이 유족을 통해 독도관련 사료를 수원 시에 기증하였다는 것은 우리 경북이 얼마나 독도에 무관심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경북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시기에 있어 경상북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3백만 경북도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로이 하고 독도가 옹도 경북을 대표하는 섬이라는 것을 알리며 이를 통해 경북의 높은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동해안에 독도역사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은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동해안 지역에 독도역사공원을 조성하여 독도박물관과 연계하고 독도와 관련한 미니어처와 조형물 등은 물론 역사적 자료들을 전시한다면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우리 국민의 높은 자긍심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 이종학 선생의 독도관련 사료를 우리 경북에 다시

기증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경북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특산품은 물론 실라리안 제품 등에 독도 로고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독도가 경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역특산품 관광홍보책자 등에 적극 활용한다면 이것들도 역시 훗날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독도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어미섬이라고 할 수 있는 울릉도와 묶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울릉도에 경비장 건설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지금도 1년에 100일 가까이 내리는 기상특보가 있을 때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고립무원의 울릉도에 관광객들이 접근하기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해소하여 체계적인 관광진흥은 물론 나아가서는 낙후된 울릉도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보건소 등의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국가보건의 의료체계의 하부조직으로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야 하는 필수적인 조직단위입니다. 더욱이 '95년부터 지역보건법의 개정과 더불어 이제 보건소는 그야말로 지역보건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복지사회가림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보건소 업무 중에서 특히 방문간호사업은 실제 농촌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으로 불우한 가구의 경제적 빈곤과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다소 해소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보건소 등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방문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실태입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야 할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에는 고작 2~3명의 보건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방문 간호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간호

및 보건직 공무원들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하여 경북 북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의 증설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말 현재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3%이며, 경북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노인인구는 전체의 12.3%임에도 우리 경북 북부지방의 경우는 전체인구의 약 23%가 노인인구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안동의 애명노인마을을 비롯한 8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서 560명의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대상이어서 서민층의 일반 노인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안동시와 경산시 두 개소밖에 없어 북부지역 대부분의 노인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농촌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의료서비스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부지방 자치단체들의 경우 전형적인 농업 시·군이라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상북도 도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도대학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은 물론 각 전문대학들의 신입생 등록률 등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경상북도 도립 경도대학교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나타나 다른 전문대학과 같이 저조한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대학교와 경상북도는 경도대학 활성화 모색에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경도대학이 위치한 예천군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역고등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유치 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예천군이 발행하는 예천소식지에 전면 광고를 하고 더욱이 출향인의 모임인 서울, 대구, 부산 등 지역별 향우회에 참석, 경도대 졸업생을 채용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지난 연초에 읍·면 순시 혹은 수백 명씩 모이는 영농교육시에도 군수가 직접 경도대학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진학을 호소하는 등 다각적으로 경도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 경도대학은 공립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미온적이며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지역주민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도대학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대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경상북도와 학교와 그리고 지역주민이 모두 경도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경도대학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을 경도대학 내에 이전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관할지역에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무원교육원을 예천의 경도대학 내로 이전하여 경도대학의 일부 부지와 교육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경도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도대학의 특성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피교육자인 공무원들에게는 청정환경과 함께 최상의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임기 내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오늘 이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천공항 전투기 이·착륙에 대한 주민 피해발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 예천에는 밤낮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굉음을 내며 공군 항공기가 쉬지 않고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수리 중인

항공기의 굉음은 사람을 기절시킬 정도로 요란합니다. 인근의 학교 교실에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연로한 노인들은 물론 힘든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에게 잠시 쉴 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를 잉태한 암소들은 전투기의 뜨고 내리는 굉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유산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항 운영에 따른 피해지역은 비단 예천만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는 물론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경상북도에 속한 피해주민을 위해 대정부건의안이나 보호대책에 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하루속히 소음피해 주민들이 이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승회 교육감님께 학교체육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상북도는 체육부분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84회 전국체전에서 경북선수단의 선전으로 자랑스럽게 전국 5위를 차지함으로써 경북의 명예를 드높인 것은 학교체육의 성공이며 경북체육인들의 피나는 노력이고 대가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2월에 경북은 시설, 예산 등 객관적인 기준에서 경기도에 비해 절대 열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2006년 전국체전을 김천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님을 비롯 경북체육을 이끌어 가시는 체육지도자 및 관계인사들에게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체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3일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2004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여 2011년까지 초·중·고교 운동선수들은 학업일수와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최소학력제에 의해서만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은 체육특기자의 선발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특기자 선발 때 경기성적만이 아닌 학교 성적, 학교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73년부터 시작된 엘리트 위주의 체육교육 방식이 그야말로 31년만에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부처 등에서는 엘리트 체육이 아니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세계대회에 대비한 체육 꿈나무를 조기 발굴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존의 엘리트 육성 위주의 학교체육에서 보통 체육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체육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동선수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학교체육 선수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한 체력적 조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운동선수로 선발되어 체육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극히 일부 종목의 일부 선수들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과 능력 여하에 따라 국가대표가 되거나 프로선수로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며 촉망받는 체육인으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못한 대부분 선수들의 경우입니다. 비인기 종목에서 지역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그렇게 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만 단지 국가대표가 되지 못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단지 경쟁에서 낙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학력은 대졸이지만 학업수행 능력은 그에 못 따라간 채 불우한 사회인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경기에서 우승한 이들 뿐만 아니라 낙오한 이들도 분명히 학교를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고의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는 최고의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난 뒤에도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 체육활동을 감안하여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운동선수가 계속 발굴될 것이며 학교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운동선수들에 대하여는 각 학교마다 분야별 체육지도자들로 골고루 확충하고 혹은 공공부문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도승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북도 공무원 여러분!
응도 경북의 균형발전과 계층 간에 소외감이 없는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제2차 본회의

김석호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의 복지와 전인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며칠 전 경상북도의 지역산업정책평가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월초 구미에서 개최한 200억불 수출기념식을 잘 치러준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이러한 일들을 잘 추진하여 경북의 위상을 드높인 주낙영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 경북에 있어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TA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그리고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육류파동, 사회병리 현상 등 특히 이라크사태의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환경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의 엄청난 재정손실과 각국의 천연자원보존 및 무기화 현상은 임가공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산업기반마저 흔들고 있는데 희망 없는 정치혼란과 변화 없는 행정정책은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그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경북도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흐름들은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옹도 경북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드높이기 위해서 3백만 경북도민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는 굳건한 용기를 발휘하여 뚝심 있는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도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우리 옹도 경북 발전에 하나의 밑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생계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5백만 도시근로자 가구 중 최하위계층 10%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보다 6%나 감소하였으나 반면 최상위계층 10%의 월평균소득은 1.68%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로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환율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피부지수는 서민들의 삶의 의욕마저 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 심화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의 중대한 요인이 되므로 이제부터라도 한시바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많은 일자리의 창출이 시급히 필요한데 이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월19일 올해 청년·서민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범고용창출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에 더불어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계형 일자리마저 붕괴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가 날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실업난 해소대책이 단기간에 그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은 여전히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시군에 소재한 소도시의 상권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경북의 참담한 실정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 격차는 다시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들 앞에서 우리 경북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장밋빛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고 빈민층과 서민복지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율경쟁시대로의 진전은 국내외 유통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할인점,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은 그나마 유지해 오고 있는 지역밀착형 재래시장의 존립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그와 더불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시장환경 및 시설개선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성과가 미흡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원정책이 이루어진 후 그 실효성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도 매우 아쉬울 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재래시장은 아직도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의 표출과 발산의 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미국의 대형할인점 월마트가 들어왔을 때 재래시장 상인들도 하여금 조합을 결성하도록 지원하여 대형유통자본에 대응하도록 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할인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도록 할 방안의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전담팀은 재래시장과 각 지역의 문화 및 관광 행사 등과 연계하여 각종 지역의 이벤트 등을 정기적으로 유치하여 역동성 넘치는 재래시장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내 재래시장 간의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절대적 경쟁이 아닌 보완적 상생전략을 추구하도록 하고 재래시장 간의 유통·물류정보 및 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래시장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

화시장, 전문시장, 향토시장, 틈새시장, 품물시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의 차별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5개 분야 85시책으로 나눠 7,000억원을 투자, 이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내 소득 2만불 시대 선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책을 강도 있게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유치 인프라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키로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2003년 초 이의근 지사께서는 경제도지사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04년 도정운영방안에 있어서도 '경제제일도정'으로 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짝 임금과 넓은 시장을 찾아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하려 하고 있고, 다른 일반 영세 중소기업들도 운영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제조업 공동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설비투자 감소와 청년실업 양산, 그리고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중소기업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중소기업을 형평성 있게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친중소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에 부가하여 중소기업지원의 실질적인 대책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지역별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지역 또는 동일업종의 지방 중소기업들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 시설과 기기의 이용,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관 유기체제의 구축, 공유가능한 대도시 유통망, 그리고 현재의 실라리안과 같은 공동브랜드뿐만 아니라 공동광고, 공동판매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와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기업들은 단순히 일정한 학력을 가진 인력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학력을 가진 인력들에게 각 중견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무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정책적인 지원만 따라준다면 기업에서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사갈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제조업체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인건비도 상승한데다 불안한 노사관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노사갈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이 시작되는 봄부터 노사이견을 보이다가 쟁의행위까지 돌입하는 연례행사가 되풀이되고 있다시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노사관계의 경쟁력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특히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기업투자결정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등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월4일 구미에서 실시된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화합 선언은 바로 지역경제살리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화합 선언의 취지에 경북 전체 산업현장의 노와 사가 호응하도록 확산시키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정치인 등이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마다의 역할을 모색하는 가칭 경북노사정민화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의 노사화합이 잘 진척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노사간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막연히 노동부의 소관사항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이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여 조정자 내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 선진국의 경우처럼 불안정한 노사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조정자 내지 중재자의 전문가그룹을 상시 파악하여 적기에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북의 교통인프라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되면서 교통접근성은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과 관광산업 인프라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경우 기존의 교통망인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미비하여 기업은 물론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4월이면 최근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됩니다만 경부고속철도가 우리 경북지역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아직 정확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중앙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른 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으려면 바로 지금 고속철도의 연계교통을 보완하고 나아가서 대체교통망

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본의원은 이에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노선화망을 이전부터 정책제안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방공항을 살리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승희 교육감님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이 발표된 이후 학교의 수준별 보충수업, 교육방송의 수능반영 등으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사교육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있지만 자칫하면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사자들의 전체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정밀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위성교육방송을 통한 수능전문강의가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인데 문제는 위성교육방송 청취를 위한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이 필수적인데 도서산간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망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수준별 보충수업 등 2.17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견해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님은 지금 나갔습시다만 부지사님과, 또 도승희 교육감님도 방금 자리를 뒀습시다만 부교육감님, 그리고 함께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질의 풍요와 기술의 최첨단 시대에 살면서도 하등정치와 부정부패라는 망국적 사회혼란과 상대적 빈곤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만 하는 존경하는 300만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문경시 출신 채희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정질문자로서 여기에 섰습시다만 부끄럽고 슬퍼서 찢어지는 가슴을 감내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상북도의 주인이신 도민여러분께 석고대죄 하는 바입니다. 2002년7월 출범한 제7대 경상북도의회는 의원의 사망과 구속, 긴급체포, 또는 재판에 계류중인 동료의원들의 안타까운 사실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현실로서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며 허탈할 뿐, 철면피라 할지라도 존경하는 300만 도민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거듭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구색이나 맞추듯 경상북도 본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들의 줄을 이은 구속사태는 도민의 공복으로서 천하에 공존할 수 없는 썩고 썩어 끓아터진 치부의 단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움 속에서 생존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중앙과 지방정치,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사슬적 복합부패와 정채되고 고인 물은 썩게 된다는 실증적 사실이 노출되고, 어느 한구석 믿고 안심할 곳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民無心이면 不立이라 했으니, 국가의 존망 자체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에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했듯이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도의원의 신분일망정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성이 있고 시대적으로 지구상의 세계인류가 상생을 요구하는 흐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우선 전일에 동료의원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만 한국과 칠레공화국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파란만장의 난상토론과 의원들의 필사적인 저지 속에서 농업인들의 절규와 통곡을 뒤로 한 채 2월1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로 경상북도 지역의 농업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한농련 전 중앙회장이던 이경해 씨가 할복하는 사태가 벌어져 결국은 한국의 농업, 농촌을 지키려다 목숨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2월17일 농림부가 내 놓은 발표를 보면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은 향후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5,890억 원이며, 이 금액 중에서 경상북도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커서 1,740억 원으로 무려 30%에 달한다는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액수는 국내 과일류의 주산지인 경상북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첨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2003년10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FTA 농업대책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우량 품종 개발과 포도 비가림시설 등 과수농업 경쟁력을 위한 투자계획을 세워 놓은 정도로 당장은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상누각으로서 공허한 메아리로 농민들에게 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를 도둑맞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지역의 주요 과실류 재배현황을 작목별로 대별해 보면, 사과재배 면적이 16,663ha에 연간 생산량이 275,000t으로 전국생산량의 64%로 단연 1위에 랭크되어 있고, 배는 4,258ha에 62,000t으로 16%를 차지하여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도는 11,211ha에 186,000t으로 44%를 생산하여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또한 7,581ha에 86,000t을 생산하여 46%로 전국 1위입니다. 자두도 4,509ha 재배면적에 55,000t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무려 73%를 차지하여 당당히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다섯 작목에서만도 전국1위 생산작목이 4개 작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정부가 119조원을 농촌농업에 투자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자치단체에서도 현실성 있는 농가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국 농업경쟁력 지원액 1조6,000억 원의 34%에 해당하는 3,500억 원을 경상북도 지역농업에 투입한다는 계획만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본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먹기에 곱감이 달다고 하는 속담과 같이 농촌 농업인들은 당장 농사철을 맞이하여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계획이지만 농업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이 나라의 농업정책과 대 농민 설득은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몸부림과 오열 속에서도 죽을 수가 없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존의 길을 찾고 있는 민족산업의 지킴이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을 위시하여 전국 생산량의 1위 품목인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등의 보호대책과 회생대책은 무엇인지? 경상북도 농촌·농업인이 이해하여 경북도정을 믿고 협조할 수 있는 현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FTA체결을 세계 대세로 받아들여 세계 시장에서 미아가 되지 않고 우리의 농업인들이 충격과 타격, 그리고 몰락과 농촌붕괴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모든 지구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포용하여 함께 가는 300만 경상북도 도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지사님께서 전국 최초라고 격찬에 고무되었던 도청 공무원에 장애인을 26명이나 공채하는 용단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용단은 한국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희망과 삶의 의욕을 충족시켜 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정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대단한 업적이라고 판단하여 지사께서 합격자들을 상대로 면담하는 장면이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때 매우 기쁘고 감격한 바 있습니다.

옛말에 말을 타면 종을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사께서 시작한 업적이니 더하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장애인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드립니다.

물론 외국의 헌법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그 하위 법에서 어떻게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3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포괄적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의 우려를 입증이나 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법률들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라는 조항이 있지만, 편의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권고사항이 대부분이어서 그 한계가 지사께서 목도하듯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보통시민들에게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거의 접근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상당수 지하철역에 리프트시설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다양한 휠체어의 규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스 역시 지상과 차대 바닥사이의 높이가 무려 8cm나 되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은 대부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동일한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과를 두어 강의하고, 정책을 논하고 입안

하면서 세계 경제의 12위를 포효하는 한국사회가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밝은 촛불을 켤 수 없다면 어느 곳에서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2001년1월22일 오이도 역에서 고재영 씨와 박소엽 씨의 추락사망을 위시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불이행과 장애인에 대한 법률 미비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헌법 내지는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져서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만이 장애인에 관한 방치가 해결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문제는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의 법효에 따라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장애인을 공직자로 공채한 업적에 더하여 이동권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 대하여 법률제정 청원을 도백의 지위를 걸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날로 증가 일로에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그들이 정상인과 차별없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생활과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장애인들 또한 정신건강 면에서는 정상인을 능가하는 순수함과 집념과 경상북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경상북도는 산림의 산업화의 산림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육림 및 조림 사업 등 57개 사업에 1,278억원의 예산을 금년에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위해 산림사업의 70%를 상반기에 발주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림면적이 넓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유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밝힌 산림사업의 세부계획을 보면 우선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 유적지를 관광명소로 바꾸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도시림을 조성하고 안동시를 최첨단 한국 산림자원의 종합 메카인 하프컴밸리로 육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우선 안동댐 주변에 1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생동물생태공원, 자생식물생태숲,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야생동물구조센터, 천연기념물교육홍보관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과 영일지구에 171억원을 투입하여 사방기념공원과 산림녹화숲을 조성하고 산림의 자연화를 위해 1,877ha에 107억원을 투입하여 경제수를 조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정 휴양공간 확보를 위해 금년에 구미, 영천, 칠곡에 휴양림 3개와 포항에 삼림욕장 1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51억원을 투입해서 임도 309km를 개설하는 본격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지사님께서서는 1,200억원이나 투입되는 거대한 산림정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이 많고 시·군세가 취약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의 정책 편중으로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상대적 발전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초단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 차별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국가의 산림정책의 협조자인 일선 산림조합들은 형식적인 정부의 지원 때문에 업무 수행에 크나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시·군 산림조합은 산림보호와 관리 육성에 따른 전반적인 정부 대행으로 산림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선 시·군 산림조합에 연간 운영비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업기술지도원은 월 78만원 정도가 지원되어 산림기술지도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산림시책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은 임도 개설 사방·육림·조림사업과 산송이 등 공판사업으로 어려운 재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지사께서는 2004년도 거대한 경상북도 산림정책을 집행하면서 함께 일선 산림조합의 운영비와 임업기술지도원의 인건비 보조를 현실화하여 산림정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의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공공근로 수준이라면 날아가는 새도 옷을 지경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부정한 돈을 받아 억, 억하고 수십억, 수백억원을 갈취하여 검찰의 호된 조사를 받고 있는 언론보도들은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는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삶 자체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존 자체가 존엄이 되는 인본주의의 행정이 되도록 강력하고도 확실한 대정부 건의를 지사께서 직접 하시도록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2월28일 발행된 지방 일간지에는 “골프장 뇌물 무더기 쇠고랑”이라는 제목 아래 경상북도 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파장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경북도청 7급 공무원 박모 씨가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검찰에 구속되어 지사께서 주창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대서특필되어 3백만 도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군의원과 도의원까지 관련된 3단계 합작품인 민간인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 부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앞서 모 시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고 여덟 명이나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경찰 신세를 저서 열심히 일하는 명경지수같이 맑고 깨끗하게 정성어린 봉사를 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누를 끼침은 물론 그들의 사기를 추락시킨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공교롭게도 서울의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에서 2월27일 3시에 산업정책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체하고 산업자원부와 IBS컨설팅이 공동으로 후원한 제1회 지역산업정책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분야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시는 지사님의 당당한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도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한 본의원으로서는 눈시울을 적시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인 바 있는 다음 날의 일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들께서는 27일 저녁 TV뉴스를 보면서 손뺌을 치고 환호했고 2월28일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고개 숙인 모습이 되었으니 도민들의 마음 속의 혼란을 어찌 달랠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 공직사회가 동요된 것 같고 이미 인사행정은 정상 궤도를 벗어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틀 속에서 부군수, 부지사, 부시장의 잡음이 인사에서 비롯되었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퇴색된 지 오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사를 보필하고 있는 핵심 보좌진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사님의 혜안이 무디어졌거나 어느 한 쪽 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무심코 던진 조약돌 하나에도 연못의 개구리는 그 돌을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위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하거나 도백을 바로 보좌하지 못했다면 그 죄 또한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랫사람의 신상에 관한 인사행정에 있어서 흠결이 발생하고 의도적인 기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영장류로서 인간의 양심을 결코 용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새출발의 씨가 되어 다시 발아될 것입니다.

어찌다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도 도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묵시적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특단의 개혁적 조치로서 허물어지고 난장판이 된 기강을 면도날처럼 확립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강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시·군과의 인사교류 문제에 있어서도 사무관의 전출 문제 등 어느 하나

환영받을만한 거리가 없고 순서도 직렬도 무시된 지 오래 됐다는 웅성거림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본의원의 고뇌에 가득찬 지적은 지사님의 측근들이 춘추필법의 정신으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으며 呪癰舐痔(주옹지치)의 무리가 되었으니 만시지탄의 후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기능의 일부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의근 지사께서는 민선3기 마지막이라는 한계에 있습니다. 흔히들 말기적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조시대에 성종 임금을 모셨던 그 유명한 한명회는 나태하여진 성종에게 글을 올려 “始勤終怠는 人之常情이니 終愼如始 하소서” 하여 깨우쳐 줬습니다. 지사께서도 민선1기 때의 포부와 각오와 청사진이 흐트러짐이 없이 퇴임시까지 동일한 결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어느 동료의원께서는 지사께 대통령에 입후보하라는 권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고매한 인격과 탁월한 행정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유의 포용력 등 남들이 갖추지 못한 분야를 지사께서는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썹에 불이 붙은 만큼이나 다급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나태하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집안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따가운 비난을 물리치고 대다수의 선량하고 성실하며 3백만 도민의 진정한 공복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진작을 강구할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의 물을 흐트린다고 했습니다. 해이된 기강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용한 감사기능을 총동원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누적된 불평불만도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했던 작금의 사태들은 지사님의 핵심 측근들의 안일하고도

정도를 벗어난 직무수행자들과도 연계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다음 세대에서는 오늘 경상북도 도사를 기록할 때 이의근 지사의 지난 날 경상북도 도정 수행이 올곧고 3백만 도민에게 복음이 되어 후임 지사들의 사표가 되었다는 현사로서 청사에 빛날 수 있도록 주어진 공직기강 확립의 호기를 흘려버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의회의 이름으로 권고드리면서 현책은 무엇인지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살을 도려내는 난고의 결단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시간도 혼돈과 무력감에 빠져 방황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VII. 5분 자유발언

□ 제3차 본회의

이정백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남효채 부지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주 출신 이정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4일밤 기습으로 내린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부지역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시름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내린 폭설은 100년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재앙으로 시설원예, 특작, 축산농가들을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태풍 매미피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한 금년 2월16일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광우병과 조류독감 파동으로 농민들은 기진맥진하던 중에 그야말로 설상가상으로 닥쳐온 이번 폭설은 농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마저 앗아갔습니다.

엇그제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를 포함하여 6개 시도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나,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피해액에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동료 농수산위원들과 함께 피해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해지역 농민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응급복구는 되어가고 있으나 절대인력 부족으로 수혜는 일부 농가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일손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복구에 필요한 철근 자재 수급을 위해 건설분야보다 우선 농업용 시설복구 자재가 보급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재정지원 분야에 보면 농업시설 복구비, 종자대, 특별위로금, 생계지원비, 이재민구호비 등은 국고

지원비로 피해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파종시기나 생육초기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적용될 기준이지 지금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대부분 출하시기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투입된 인건비와 연료비, 농약대, 영농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전연 책정되지 않고 오로지 복구비만 지원 지원하겠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탁상행정의 발상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에 특별재해지역에 지원하는 농업시설 복구비와 철거비의 경우 자부담 55%는 담보능력이 있어야 용자가 가능하므로 담보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농가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경영자금의 경우 피해 농가당 500원까지 용자해 준다고 하고 있으나 그나마 이자율이 3%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농가부채가 1,500만원 이상인 농가에서는 보증이나 담보를 설정해야만 용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이 정도 부채가 없는 농가가 몇이나 되며, 이웃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도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이런 용자제도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일부 축산농가의 경우 무허가 축사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지사는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똑바로 보고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복구비뿐만 아니라 농작물, 가축피해에 대한 현실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사과, 감귤 등 6개 품목에 한정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의 범위도 오이, 토마토, 인삼 등 원예 특작 작물을 포함하여 최소한 30개 품목 정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재해농가에 포함시킴은 물론 축산농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양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농가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율 3%를 자치단체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농업시설 복

구에 필요한 용자금의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사 직전의 우리 농촌농민을 살리는 데에 전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남효채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승회 교

육감님과 배석한 관계관 여러분, 문경 출신 채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타시도에서도 본업을 뒤로한 채 기꺼이 문경을 방문하여 설해 농업인들과 시민들을 위로·격려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

경상북도 본청과 시군에서 제설작업과 피해농업인과 농가의 복구에 적극 참여하신 군·경,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개를 깊숙이 숙여서 문경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북부지역 11개 시군 중에서 300억이 넘는 엄청난 피해가 문경시에 집중되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게 폐광의 땅 문경에 또 한번 재앙을 주었습니다. 18만명을 상회하던 인구는 이제 겨우 8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민들은 FTA 협정비준안 국회 통과로 죽을 수가 없어서 살아가는 농업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두 번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농업관계는 동료의원께서 절규에 가까운 현실을 소상하게 발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 문창고등학교라는 사학의 명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 학원은 문경여자고등학교와 동일한 재단으로서 서봉 이동영 선생께서 설립한 모범적이고 우수한 재단입니다. 문창고와 문경여고는 공히 24학급으로서 학생수가 양개 학교 1,600명 정도이고 학부모들은 3,20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난 4일밤부터 5일까지 내린 100년만의 대설은 최고 65cm를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창고등학교 체육관이 폭격을 맞은 것과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의근 지사께서도 문경 방문시 가장 먼저 문창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파괴된 체육관의 현장을 살펴보고 교장 및 교직원들을 위로·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피해액만도 26억에 달하는 학교시설입니다. 금번 폭설로 경상북도내의 학교시설 피해액은 문창고등학교 체육관이 26억원, 영주 장수초등학교가 1,200만원, 함창초등이 1,000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고등이라고 해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존경하는 도승희 교육감을 위시하여 직원 한 사람도 현지위로는 제외하더라도 확인 방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보시고 폭설로 무너진 현장을 감상만 하고 있

었는지 강력한 질문을 드리면서 아울러 강력한 경고를 드립니다. 학교시설 파괴에 대한 도의적인, 또 양심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청 직원들만이 가정에 TV도 없는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없으시다면 전 직원들에게 본의원이 20인치를 한 대씩 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직무의 나태에서 빚어진 일이라면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본의원의 임기 끝까지 교육감과 직원들의 변화 모습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종욱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부지사를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

서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질의 내용이지만 지금 낙동강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딱한 사정이 하도 시급하고, 또한 농민들의 하소연이 많기에 이 사실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대안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임하댐 상류지역 특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14일 법률 제6606호로 제정되어 임하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3개 시군 자그마치 162.27km²의 토지가 일체의 개발행위 및 증축·개축을 할 수 없으며, 기존 건물이 없어도 오염총량제의 규제에 따라서 규제 및 관리 대상이므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물론 사유재산권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설명한 낙동강수계법 8조2항 “토지 등을 매수하는...”의 설명을 보면 농약과 비료 과다 사용시와 하천부지 농약, 비료 사용시 징역 5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주민이 원치 않는 댐을 막아놓고 생계를 위협하는 수계법으로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로 인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면적을 보면 안동시가 2,009만1,000평입니다. 청송군이 2,057만4,000평입니다.

영양군이 1,011만6,000평입니다. 3개 시군 11개 읍면은 하류 지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물받이로 지정되어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영천댐 2개시 2개 면과 운문댐 2개 시 3개 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본류 1,000m, 지류 500m, 지류에서 지류 300m는 하류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증·개축, 개발행위 제한으로 환경부에서 땅을 살테니 가격이 맞으면 팔고 맞지 않으면 안 팔아도 된다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임하댐이나 댐을 만들 때 그때 보상비에 지금 토지를 구입하는 가격이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 당시의 3만원이 지금은 1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등의 매도 신청시 감정가의 불합리로 팔지 않는 경우에 3년이내에는 재매도 신청시 감정평가 수수료를 매도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3년

내에는 매도 불가능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온 감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류상으로는 3년이지만 5년 이내에는 재매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변구역 주민들의 요구는 국가가 상수원 관리지역과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4조에 의거 하류지역 주민의 돈을 거두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목 및 입목은 등기된 나무만 산다고 하는데 수계법에도 입목은 보상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고,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도 건물, 입목, 토지 등에 정착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심지어 모래, 자갈도 보상하라는 명시가 있으므로 적정가 보상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비닐하우스나 미등기 건물도 보상하겠다고 함에도 철거비를 지주가 부담하라는 태도는 특례법 4조2항3호에 위배됨을 당국이 알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류 주민이 적정 보상을 받도록 하며, 팔면 사고 안 팔면 안 산다는 논리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논리인데 가뜩이나 규제를 받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주민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목보상 및 정착 물건에 대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환경부에 강력 대응하여 대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재산상의 불이익과 법률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낙동강 상류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힘없는 농민들이 도지사과 도정에 거는 기대는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10건
- 동 의 안 : 1건

□ 조 례 안 : 10건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3,645명”을 “3,685명”으로 하고, 제1호 중 “1,699명”을 ”1,736명”으로, 제4호 중 “88명”을 “91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4명(산림환경연구소 조경사업과 임업5급 1명, 임업6급 1명, 임업7급 1명, 임업8급 1명)은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정원의 총수는 <u>3,645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699명</u></p> <p>2. ~ 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88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u>3,685명</u>..... </p> <p>1. : <u>1,736명</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u>91명</u></p>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1】 경제통상분야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중 과학기술진흥과란 건명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통상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과학기술 진흥과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나. 허가의기준 다. 사업의 휴지 등의 신고 라. 사업의 승계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승인, 변경명령 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 자. 위해방지조치 차.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카. 보고·조사등 타. 청문 파. 과태료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제3조제1항, 제3항 동법제3조의2제2항 동법제6조 동법제7조제3항 동법제8조제1항 동법제8조의2제1항 동법제10조제1항,제4항 동법제14조제2항,제5항, 제6항 동법제32조제2항 동법제34조 동법제35조제1항 동법제36조의2 동법제48조제4항	수임 기관 시장 군수

문화체육관광분야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중 문화예술과란 건명 제8호 다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문화예술과	9.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시장 군수

농수산분야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중 농산과란 건명 제6호 를 삭제하고 보건환경산림분야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중 수질보전과란 건명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별표 1】

신·구조문 대비표

경제통상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과학기술진흥과	4. 사업자에 대한 조정 명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	시장 군수	과학기술진흥과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나. 허가의 기준 다. 사업의 휴지등의 신고 라. 사업의 승계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승인 변경명령 야.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등 자. 위해방지조치 차.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카. 보고·조사등 타. 청문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제1항 제3항 동법제3조의2제2항 동법제6조 동법제7조제3항 동법제8조제1항 동법제8조의2제1항 동법제10조제1항 제4항 동법제14조제2항, 제5항, 제6항 동법제32조제2항 동법제34조 동법제35조제1항 동법제36조의2 동법제48조제4항	시장 군수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문화예술과	1~8(생략) (신설)		시장 균수	문화예술과	1~8(현행과 같음) 9.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검사 및 지도감독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	시장 균수

농수산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농산과	6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등록: 양곡가공업 나. 신고: 양곡도정업 다. 별첨(등록) 라. 과태료(신고)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7칙 제4조 및 제4조의2, 동법제33조의 제2호, 동법 제36조 제1항제2호	시장 균수	농산과	6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삭제>	

보건환경산립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수질 보전과	1. 등취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가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계속 설계시공 할시의 시공 감리자 지정 2~10. (생략)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제41조	시장 균수		<삭제> 2~10.(현행과 같음)	<삭제>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정담당, 평가심사담당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날인 등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중 “100분의 75로”를 “100분의 50으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제1항중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그 과세표준액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제9항중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0항중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제48조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제1항중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영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영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제1항중 “영 제105조의2”를 “영 제105조의3”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영 제10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중 “신고납부”를 “신고 또는 납부”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다음달 10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납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를“(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제1항중“신고납부”를 각각“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6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
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
나, 각급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
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
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

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 올림한다.

$$\frac{\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6조(<u>토요일휴무제</u> 및 <u>전일근무제</u>)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각급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u>토요일휴무제</u> 및 <u>전일근무제</u>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6조 (---일휴무제---) ① 생략</p> <p>②---일휴무제-- -----생략---</p>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일비, 여비 및 기타 직무상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적용하되, 당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전

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회의참석과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 해당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일비, 여비 및 안건심의 수당 이외에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④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⑤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⑥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은 각 기관에서 새겨 당해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과에서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하며,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당해기관에서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별표 2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공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 (재등록)사유		
		관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자 (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	
		관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mm×297mm(한지))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기술(Biology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생물산업
2. 환경공학기술(Environment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환경산업
3.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4.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나노산업
5.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
6. 기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개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정관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재산의 조성)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경상북도와 당해 시·군은 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사업)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 (임원)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임기, 임면, 선출방법,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사회) ① 법인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 (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사업실적 및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인의 운영 및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열람 및 제공 등) ① 경상북도와 시·군은 법인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법인의 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법인 설립의 보고 등) ① 도지사는 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의회는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준수의 의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된 첨단산업에 관한 재단법인은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재산의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u>재원으로 조성</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군의 출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p>제 6 조 (재 산 의 조 성)</p> <p>----- -----<u>자금</u>----- -----</p> <p>1~3(원안과 같음)</p>
<p>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경상북도와 당해 시·군은 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u>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대부</u>, <u>출연할 수 있다</u></p>	<p>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p> <p>-----</p> <p>-----<u>대부할 수 있다</u></p>
<p>제10조 (임원)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u>이사</u>와 <u>감사를 둔다</u></p> <p>② 임원의 임기, 임면, 선출방법,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0조 (임원) ① -----</p> <p>----- -----<u>2인의 감사를 둔다.</u></p> <p>② 원안과 같음</p>
<p><u><신 설></u></p>	<p>제18조(법인 설립의 보고 등) ① 도지사는 <u>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 도의회는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8조 (비밀준수의 의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9조(원안과 같음)</p> <p>제20조(원안과 같음)</p>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방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도 담당 실국장 및 도의회 추천자
5.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
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
에는 당해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도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 노사정관련사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관계 실·국장
2. 도의원 1명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장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협의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해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투자유치진흥관) ①투자유치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통상실장이 투자유치진흥관이 된다.

②투자유치진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투자유치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투자지원센터·무역관·지사·사무소 및 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허가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운영
7.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등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도지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투자의 지원

제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은 경상북도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입지지원)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도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지원은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의 지원

제14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도지사는 도외소재 공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도지사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도지사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이전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도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 금액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제20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 4. 시·군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 5. 기타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시중제1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도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

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포상) ①도지사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현금지원, 이전보조금 지원 등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공장설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 대비표(별표 및 별지서식)

<개 정 안> -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공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재등록)사유		
		관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자 (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	
		관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개 정 안>-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input type="checkbox"/> 등 록 · <input type="checkbox"/>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m²) 또는 210mm×297mm(한지)

경상북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3. 1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해당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 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제조·가공된 식품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

③“식재료 공급자”라 함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④“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경상북도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임무) ①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안전성·원산지 등에 대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의 학교 급식 식재료 판매 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신청) ①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를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시장·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학교 급식 식재료의 공급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식재료 공급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농수축산물 공급내역을 시장·군수가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식재료 공급자가 의무를 해태 하거나 제4조제4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 학기별 지원금 사용 내역을 지역 교육청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통보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통보 의무를 해태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p>제2조(정의) ① (생략)</p> <p>②“<u>우수 농수축산물</u>”이라 함은 <u>지역(국내포함)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제조·가공된 식품</u>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을 말 한다.</p>	<p>제2조(정의) ①(현행과 같음)</p> <p>②“<u>우수 농수축산물</u>”이라 함은 <u>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제조·가공된 식품</u>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p>

□ 동 의 안 : 1건

- 경상북도와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주간의자매결연체결안

경상북도와 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주간의 자매결연 체결안

경상북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간의 교류여건이 성숙되고 상호 공동발전이 기대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간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이에 의결한다

2004년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의결사항

- 건 명 : 경상북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간 자매결연 체결
- 자매결연 주요 협정사항
 - 경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교류확대
 - 행정, 민간 참여로 공동 이익과 발전에 기반을 두고 협력
 - 상호 프로그램 개발, 실천 등 상호 지속적인 노력 경주
 - ※ 자매결연 협정서는 양 도·주간 협의하여 상기 추후제작
- 체결방법 : 자매결연 협정서에 양지사 서명

2. 추진일정

- 2004. 3월 도의회 의결
- 2004. 자매결연 체결(일정별도수립)

3. 기대효과

- 자바섬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남아지역 진출 거점 확보 유리
- 농·수산업, 제조분야 등 경북의 첨단기술과 기자재 수출 기대
-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문화·관광교류 활성화 기대

붙 임 : 경상북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간의 자매결연 체결
설명자료 1 부 끝.

경상북도와 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주간의 자매결연 체결 설명자료

1. 자매결연 제안 자치단체

-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2. 필요성

- 경북도 진출기반이 취약한 동남아지역 시장진출 전진기지 확보
- 풍부한 자연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농.수산업 등 제조.가공기술이 낙후한 족자주에 경북의 첨단기술 및 기자재 수출 기대
- 자바섬 중심부에 위치하고 편리한 교통,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문화.관광교류 활성화가 기대됨

3. 경북-족자카르타 교류 추진경위

- 2001.1.16 인니 족자카르타 주지사 교류 희망의사 전달받음.
- 2001.2.14 교류희망 서신 발송(도→인니)
- 2001.2.25 인니 족자카르타 주지사일행 방문희망(4.21~26) 서신 접수
- 2001.3.2 방문일자(4. 11~13) 제안서신 발송(도→ 인니)
- 2001.3.28 인니 족자카르타 주지사 경북 방문취소 통보
 - ※ 인니 대통령 해임에 따른 정국 불안정
- 2003. 3. 19~2. 22 실무단 방문 (국제통상과장 외 3)
- 2003. 4 경북대표단 인니 방문추진중 이라크 사태로 연기
- 2003. 7 족자주지사 경주엑스포 행사 초청
- 2003. 9. 7~9. 10 족자 대표단 도방문(과쿠알람 부지사의 4명)
 - 9. 9 (수) 10:00 교류의향서 체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5. 양 자치단체 비교

구 분		경 상 북 도	족자카르타주
인 구		282만명	320만명
면 적		19,023km ²	3,185km ² (1/6)
산업경제	1인당GDP	'01년 9,578불	'00년 미화 372불
	수 출 액	03수출251억불 (전국의 12.9%)	'00수출 9,200만불
	주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산업(구미) • 철강,기계류(포항) • 섬유,금속,광화학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축산업발달 (벼,코코넛,사탕수수,목축) • 섬유, 의류, 가죽제품 등 • 목재, 수산업 제품 등
지 역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 • 역사와 전통의 고장 • 농업과 공업 교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자바섬에 위치 • 문화유적, 관광자원 풍부 • 특별자치구 중의 하나 (세습왕이 도지사 역임)
자매결연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오하이오주 • 일본 시마네현 • 중국 하남성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남아공 노스웨스트주 • 프랑스 알자스주 • 터키 불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교토부(1985. 7. 16)

의정활동보고서(제187회 임시회)

2004. 3 인쇄 / 2004. 3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